

신 춘 규
 본 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주)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by Shin Chun-gyu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An introduction on Framework of
 APEC Architect Project

198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의 바람은 러시아를 비롯한 사회주의의 경제 체제가 붕괴된 탈냉전 시대를 맞아 그 범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간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들이 서로의 경제 정도에 따라 무역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경제의 범위가 선진국을 위주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기준이 설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이 정해지면서부터 세계시장은 서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설계 분야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개방대상에 포함되고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아젠다)를 통해 선언문이 채택됨으로써 포괄적인 양허(요구 및 요청)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자격이 요구 되는 건축설계를 포함한 전문서비스 분야는 서로의 자격 동등성을 기초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비정부기구인 UIA에서는 자발적으로 '건축 실무에서의 전문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1999년 중국 북경 총회에서 권장 안을 채택하게 이르렀다. 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5년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인증원을 설립하고, 건축사등록원 설립의 필요성 등 제도개선을 위해 행보를 숨 가쁘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APEC 건축사 제도는 APEC 회원국 간 APEC 설립정신에 맞는 건축사 상호 인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UIA의 상호인증 제도보다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늦게나마 필요성을 인식하고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2회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중앙아시아 이전에 정회원국으로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에 우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이 제도가 국내에서 빠르게 정착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APEC 건축사 프로젝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목표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1989년 설립되어 회원국 간 인력자원, 기술, 관광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이다. APEC의 설립 기본정신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 간 기술협력과 경제 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가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필리핀)을 중심으로 창설된 후 9개국(중국, 칠레, 홍콩,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APEC 산하기구인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회원국 간의 건축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축사에게 현존하는 장애를 없애고 건축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APEC 건축사 제도의 기본 틀의 중심 기능은 참가국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여건의 공통 요소를 이행하고 현재 자국의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으며, 등록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입증자료가 있는 APEC 건축사들의 등록 대장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정된 등록 기준은 상호 국가간의 전문 건축사로서의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주재국은 자국의 특수한 실무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무적 측면을 고려 특별자격 여건을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APEC 건축사 제도의 추진 경과

일본과 호주, 홍콩 등의 발의로 2001년 호주에서 발족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추진위원회와 2차례의 임시위원회를 거쳐 지난 2005년 5월 동경에서의 제1회 중앙아시아회에서 12개국이 정회원국으로 등록하고, 2005년 9월 19일 업무를 개시했다. 한국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준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왔으나 정부와 각 건축 단체의 동의를 얻지 못해 옵서버의 자격으로 지난 동경회의 때 건교부 사무관과 대한건축사협회 대표 2명이 참석하였다. 이미 WTO에 의해 우리의 시장은 상당 수준 개방되어 있고 건축시장 또한 타국에 비해 상당히 개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중국 등 APEC 회원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축사들이나 앞으로 진출을 꿈꾸는 건축사들의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에 건설교통부와 각 단체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까지의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발족회의(Inaugural Meeting)

- '01. 9. 17~18, 호주 브리즈번, 10개국 참가
- 「APEC 건축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건축사 자격의 인증/인정절차등을 마련하기로 함.

□ 제1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2. 6. 13~14, 호주 시드니, 10개국 참가
- 「APEC 건축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건축사 자격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제2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2. 12. 12~13,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 11개국 참가
- APEC 건축사 등록기준 협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

□ 제3차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04. 2. 18~19, 대만 타이베이, 12개국 참가
- 2004년 7월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각국 이사추천(인)하기로 함.
- APEC 사무국은 대만에서 맡기로 함.

□ 제4차 추진위원회 및 제1차 임시위원회 개최

- '04. 9. 22~23, 미국 하와이
- APEC 건축사 교육기준 결정 ☞ “4년 전일제 학업 또는 그와 동등한 교육”
- APEC 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 결정
- 중앙아시아 정책 및 지침 마련
- 심사위원회의 업무 결정

□ 제2차 임시위원회 및 제2차 중앙아시아 개최

- '05. 5. 30~6. 1, 일본 동경
- 14개국 64명 참석(정회원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캐나다, 멕시코-12개국, 옵서

버-한국, 싱가포르 2개국)

- 각국 심사위원회의 승인 관련
- APEC 건축사 등록 데이터베이스 및 심사위원회 웹사이트 운영지침 마련
- APEC 건축사 시행일 결정 : '05. 9. 19일
-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 운영지침 마련
- 신규 가입절차에 관한 사항
 - ☞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요건을 준비하고 모든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
 - ☞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그간 읍저버로 참석 한 점이 참석되어, 별도의 동의 절차없이 운영지침에 따른 준비사항을 마련하여 사무국에 보고만으로 가입 가능.
- 차기 회의는 '06. 5월 또는 6월중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기로 함.

□ APEC 건축사 프로젝트에 관한 공청회

- '05. 9. 2(금),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중강당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업무에 관한 위임

- 건설교통부로부터 APEC 건축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침 마련 등 모든 준비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위임 받음('05. 10. 7)

□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구성

- 각 단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명으로 구성을 완료함(명단 별첨 참조)

□ 제1회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회의 개최

- '06. 2. 8. (수) 오전 8시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대회의실
- 주요안건 : 정회원국 등록을 위한 내용 검토,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검토

APEC 건축사 등록의 기준 및 유지

APEC 건축사의 등록 기준은 각 회원국의 다른 문화 교육조건 등을 가급적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각 회원국의 심사위원회에서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육, 면허 취득 전 최소 실무경력 그리고 면허취득후의 경력 등에 기준을 설정하였다.

1. 건축교육 : 건축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은 건축을 주된 요소로 하는 4년 이상의 대학 수준의 전일제 교육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국의 심사위원회에서 상기한 전일제 건축교육과 동등하다고 결정한 구조화된 경험학습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면허 취득 전 실무경력 기간의 충족 : 최소 통산 2년간의 소정의 기간 동안 본국이 정한 바에 따른 다각적인 건축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3. 건축사 등록·면허 취득후 실무경력 : APEC 건축사 등록 신청자는 본국에서 건축사로서 최초 등록·면허취득 후 최소 7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이 실무는 예비조사 및 설계개요의 작성, 설계, 계약문서의 작성 및 업무 관리의 실무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등록 신청자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계약관리 등의 분야에서 실무 책임을 맡은 건축사로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한다. 실무의 현재성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직전 2년간 상기한 실무 책임자로서의 실무를 지속하지 않은 건축사는 APEC 건축사 등록 대장에 기재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을 받거나 다른 소정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APEC 건축사의 등록은 각 국에서 정한 기간마다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국의 심사위원회가 부과한 계속교육의 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국의 APEC 건축사 감독 기관은 APEC 건축사 등록 대장을 구축 관리 운영하여야하고,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할 책임을 갖는다.

대한민국 APEC 건축사 (감독)위원회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중앙이사회와 각 국의 APEC 건축사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를 둔다. 중앙이사회는 APEC 건축사 기본 틀에 관한 제반 사항의 최종 책임을 지고, 각 국은 중앙이사회 회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후 자국 내에서 APEC 건축사의 기본 틀을 시행할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이사회는 주된 책무는 APEC 건축사 등록에 요구되는 수준과 기준을 결정하고 APEC 건축사 등록대장의 관리를 위한 운영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중앙이사회는 이 기준 및 운영절차의 APEC 권역 내 건축 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과 이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중앙이사회는 각 국의 감독위원회에 APEC 건축사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지 여부에 대해 사후 재심사할 책임이 있으며, 목표 및 성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건축사의 권역 내 이동성을 촉진하는 중앙이사회 역할의 홍보도 중요한 기능으로 맡는다.

참가국들은 윤번제로 APEC 건축사 중앙이사회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간사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국은 프로젝트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APEC 건축사 웹 사이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위원회의 주된 책무는 자국의 등록/면허를 가진 APEC 건축사의 등록을 위한 APEC 건축사 등록대장의 한 부분의 운영이다. 감독 위원회는 중앙이사회가 채택한 기준을 APEC 건축사 등록 신청자가 준수하였

음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등록·면허 취득 후 실무경력을 심사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요구되는 수준의 지속적인 유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운영과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가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준비업무의 위임을 받았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계의 단합을 위해 건축 관련 모든 단체로부터 각 단체를 대표할 수 있고, APEC 건축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 내의 건축사를 심사하고 그 등록대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9명의 위원들을 추천받아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명함으로 건설교통부의 건축 기획팀장을 포함한 10인의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의 주요 업무추진 일정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는 3월초까지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정회원국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간사국(대만)에 준비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제1회 중앙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회원국의 등록절차가 간소화 되도록 의결된 바대로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간사국은 준비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회람을 한 후 정회원국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후 적절한 홍보기간을 거쳐 국내건축사의 APEC 건축사의 신청을 4월에 받을 예정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APEC 건축사 프로젝트의 일주기가 되는 올 9월19일에 대한민국 APEC 건축사의 등록대장의 등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언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이제 회원국 간의 최소 인증 기준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해결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이 기준에 인증을 원하는 생방(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 기관간의 이해관계도 문제이지만 각 국의 추가 요구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며, 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대내적으로는 등록원의 설립 등 국내의 건축사 관리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차별화된 건축사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가 아니다. 우리 현실에 급하게 소용돌이치며 변화하고 국제화되어가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국제적인 제도로써 판단되며 이는 후에 ARCASIA나 UIA의 인증문제 협의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한국이 타국과의 동등한 위치 또는 유리한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좋은 자질을 갖춘 많은 APEC 건축사들을 배출함으로써 국내 건축계에서의 우리 건축사들이 결코 국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나아가서는 APEC 권역내의 국가에서 실무를 하고자 하는 많은 국내건축사들이 APEC 건축사로 등록함으로써 더 쉽게 업역에 접근할 수 있고, 각 회원국들이 자국 내 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사의 자격을 APEC 건축사에 등재된 건축사로 제한했을 때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 참고

- APEC 건축사 프로젝트 중앙이사회 www.apecarchitect.org
-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www.apec-architect.or.kr

별첨 1. 대한민국 APEC 건축사 위원회 명단

직책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단체	비고
위원장	송기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단체 합의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 아카시아 전임부회장
부위원장	김지덕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고문 아카시아 전임부회장
위원	이근창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아카시아 차기회장
위원	박연심	건축사사무소 장원 대표	대한건축학회	여성건축가협회 전임회장
위원	이상준	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		대한건축학회 이사, AIA
위원	이상림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Hon. FAIA
위원	조성중	(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대표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Hon. FAIA
위원	유태용	(주)테제 건축사사무소 대표	새로운문화를 실천 하는 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이사, AIA
위원	이필훈	(주)태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새로운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위원	김기석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장	건설교통부	
사무국	신춘규	(주)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AIA
	송길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사무관	건설교통부	
	김성엽	대한건축사협회 기획팀 사원	건축사협회	